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23일, 이명순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명순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조례 관련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첫째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서는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운영 및 안전에 대한 기존

시행령 위임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전격 위임하였기에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겸직신고·변경사항을
연 1회이상 공개하도록 신설되었기에

상기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공개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각각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9조제3항 및 제41조”를 “영 제41조제4항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41조제1항”을 “영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1조제2항”을 “영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0조제2항”을 “영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영 제42조제1항제5호”를 “영 제4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2조제2항”을 “영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영 제43조제5항”을 “영 제4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영 제43조제5항”을 “영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34조제1항”을 “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부터 제88조”를 “법 제98조부터 제10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법 제43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제12조제3항 관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증언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진술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

직인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지 제4호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2조(「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의 개

정)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평창군회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창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자 (서명)</p> <p>평창군의회위원장 귀하</p>						

제4조(「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5조(「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5일”을 “4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5일”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일”을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6월”을 “5월·6월”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4조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

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15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라 한다) 제42조”를 “이라 한다)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26조 내지 129조”로 한다.

제8조(「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영 제15조의3제2항”을 “영 제37조”로 한다.

제9조(「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사

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평창군규칙”을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